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#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## 제 2 민 사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7가합408663 손해배상(기) |
| 원 고 | 1. [redacted] |
| | 2. [redacted] |
| 주위적 피고 | 1. [redacted]시 |
| | 2. [redacted]시 |
| 예비적 피고 | [redacted]도 |
| 변 론 종 결 | 2018. 9. 18. |
| 판 결 선 고 | 2018. 10. 30. |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경기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1.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주위적 피고 [redacted]시(이하 '피고 [redacted]시'라고 한다)는 원고 [redacted] 유한회사(이하 '원고 [redacted]'이라고 한다)에게 1,437,933,473원, 원고 주식회사 [redacted]건설(이하 '원고 [redacted]건설'이라고 한다)에게 313,437,5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. 12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주위적 피고 [redacted]시(이하 '피고 [redacted]시'라고 한다)는 원고 [redacted]에게 1,167,018,471원, 원고 [redacted]건설에게 254,384,1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. 12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예비적 피고 [redacted]도에 대한 청구취지

예비적 피고 [redacted]도(이하 '피고 [redacted]도'라고 한다)는 원고 [redacted]에게 2,604,951,944원, 원고 [redacted]건설에게 567,821,6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. 12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펀드 설정 및 당사자의 지위

1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고 한다)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[redacted]자산운용 주식회사(이하 '[redacted]자산운용'이라고 한다)는 2010. 12. 6. 신탁업자인 [redacted]증권금융 주식회사(이하 '[redacted]증권금융'이라고 한다)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인 '[redacted]사모부동산투자신탁'(이하 '이 사건 펀드'라고 한다)을 설정하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내용의 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2)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, 2,725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(집합투자증권)을 발행하여 수익자(집합투자자)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원고 [redacted]건설이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에 건축한 [redacted]아파트 미분양분 399세대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를 매입한 다음,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수익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. 한편 [redacted]자산운용, [redacted]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구조로 원고 [redacted]건설이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에 건축한 [redacted]아파트 미분양분(이하 '[redacted]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인 '[redacted]부동산투자신탁'(이하 '[redacted]펀드'라고 한다), 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동에 건축한 [redacted]아파트 미분양분(이하 '[redacted]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인 '[redacted]사모부동산투자신탁'(이하 '[redacted]펀드'라고 한다)을 각각 설정하였다.

3) 원고 [redacted]건설은 2013. 10. 31. 이 사건 펀드의 최초 수익자인 A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다음 2013. 12. 5. 이를 다시 원고 [redacted]에 양도함으로써, 원고 [redacted]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 지위를 최종 양수하였다. 한편 원고 [redacted]건설은 원고 [redacted]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증권 매입자금 일부를 대출받을 당시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, 원고 [redacted]에 나머지 매입자금을 대여하였다.

나. 이 사건 아파트 취득,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취득세, 등록세 면제결정

1) [redacted]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, [redacted]펀드, [redacted]펀드가 설정된 2010. 12. 6. 원고 [redacted]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 및 [redacted]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010. 12. 8. 금융감독원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신청하여 2010. 12. 14. 등록을 마쳤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2) 한편 [redacted]증권금융은 그 무렵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9조의2 제3항[1](이하 '이 사건 면세조항'이라고 한다)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한 취득세 ·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, [redacted]구청장은 2010. 12. 10. [redacted]증권금융에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취득세 · 등록세가 면제되었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.

다.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

1) [redacted]시장은 2015. 3. 6. '[redacted]증권금융이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'는 이유로 [redacted]증권금융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[redacted]아파트 취득세 4,347,268,670원, 등록세 4,370,938,630원, 농어촌특별세 2,168,219,520원, 지방교육세 821,583,000원 합계 11,708,009,820원을 부과하였고,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[redacted]증권금융에 대하여 [redacted]아파트 취득세 3,787,791,910원, 등록세 3,808,411,360원, 농어촌특별세 1,898,019,770원, 지방교육세 715,861,260원 합계 10,210,084,30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과세처분'이라고 한다).

2) [redacted]자산운용, [redacted]증권금융은 2015. 3. 6. 이 사건 과세처분을 이유로 원고 [redacted]에 지급할 예정인 분양수익금 잔액에 대하여 배당을 유보하였고, [redacted]증권금융은 2015. 4. 20.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.

3) [redacted]구청장은 2015. 4. 21. 일산아파트 취득세 · 등록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41세대를 압류하였고, [redacted]시장도 2015. 5. 13. 이 사건 아파트 및 [redacted]아파트

1)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(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)
③ <전략>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, <후략>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취득세 · 등록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59세대를 압류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압류'라고 한다). 이후 압류된 이 사건 아파트 중 3세대는 일부 세금 납부 후 해제되었으나, 나머지 97세대는 계속 압류된 채로 남아 있었다.

라.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해지, 과세처분 취소 및 압류 해제

1) 원고 [redacted]과 [redacted]자산운용, [redacted]증권금융은 2015. 12. 3.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[redacted]건설이 [redacted]증권금융으로부터 그때까지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87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 [redacted]건설은 같은 날 [redacted]증권금융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7세대를 매수하였고,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.

2)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5. 12. 9.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.

3)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압류도 모두 해제되었다.

마.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

1) 원고들은 2017. 3. 6. [redacted]증권금융, [redacted]자산운용을 상대로 [redacted]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995호로 [redacted]증권금융, [redacted]자산운용이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거나 피고 용인시, 고양시의 위법한 압류처분에 가담하는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2) 원고들은 2018. 1. 10. [redacted]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결을 선고받았고,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, 2018. 8. 31. 서울고등법원(2018나2010218호)으로부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, 15, 18, 19, 3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

[redacted]증권금융이 이 사건 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각 해당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세법의 관련 규정 및 실무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.

그런데 과세관청인 피고 용인시 소속 [redacted]시장, 피고 [redacted]시의 위임을 받은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은 [redacted]증권금융이 이 사건 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, 위 위법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.

또한 [redacted]금융신탁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펀드, [redacted]펀드, [redacted]펀드를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, 피고 용인시 소속 [redacted]시장은 [redacted]펀드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취득세,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이유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고, 피고 고양시의 위임을 받은 고양시 [redacted]구청장은 [redacted]펀드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취득세,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이유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.

[redacted]증권금융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세금이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, 이 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고,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.

위와 같은 피고 [redacted]시 소속 [redacted]시장, 피고 [redacted]시의 위임을 받은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 등 담당공무원의 위법,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된 바람에 원고 [redacted]은 합계 2,604,951,944원,[2] 원고 [redacted]건설은 합계 567,821,673원[3]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.

따라서 주위적으로, 이 사건 아파트 87세대 중 48세대를 압류한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, 원고 [redacted]에게 손해배상금 1,437,933,473원, 원고 [redacted]건설에게 손해배상금 313,437,56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, 이 사건 아파트 87세대 중 39세대를 압류한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, 원고 [redacted]에게 손해배상금 1,167,018,471원, 원고 [redacted]건설에게 손해배상금 254,384,1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, 예비적으로, 피고 [redacted]도에 대하여, 원고 [redacted]에게 2,604,951,944원, 원고 [redacted]건설에게 567,821,67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1)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

---

2) ① 이 사건 펀드 분양수익금에서 지출됨으로써 원고 [redacted]이 배당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 및 이 사건 압류 해제 관련 법률비용 119,146,035원
② 이 사건 압류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1세대에 관한 재분양비용 17,100,000원
③ 이 사건 압류로 잔금지급이 지연된 아파트 11세대에 관한 잔금의 법정이자 상당액 205,073,995원
④ 이 사건 압류로 분양이 중단된 기간에 미분양분 87세대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로서 원고 케이성복에 배당될 이 사건 펀드 분양수익금에서 지출된 126,814,200원
⑤ 이 사건 압류로 분양이 중단된 기간의 미분양분 87세대에 관한 분양대금 법정이자 상당액 1,948,536,497원
⑥ 배당유보된 분양수익금에 대한 배당유보 기간의 법정이자 상당액 188,281,217원

3) ① 분양수익금 배당유보 때문에 원고 일레븐건설이 원고 케이성복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선순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지출한 대출비용 41,400,000원
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 아파트 32세대를 원고 일레븐건설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유권이전비용 252,031,103원
③ 미분양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재산세 34,252,592원
④ 미분양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2016년분 종합부동산세 240,137,978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,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,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,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,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,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70600 판결,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(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2747 판결,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),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,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, 이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31828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판결 참조).

2) 먼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, 대법원의 판단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 등록 전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나. 1) 다음으로, 피고 [redacted]시 소속 [redacted]시장의 [redacted]펀드의 취득세, 등록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, 피고 [redacted]시의 위임을 받은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의 [redacted]펀드의 취득세, 등록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펀드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.

2)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2항은 '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'고 규정하고 있고, 구 지방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9조의 2는 '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지방세기본법'이라고 한다) 제9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규정)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. 다만,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
3) 살피건대, 이 사건 과세처분은 [redacted]증권금융의 [redacted]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의 취득행위를 이유로 하는 취득세, 등록세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자본시장법 규정은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며, 위 지방세법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, 집합투자기구인 [redacted]증권금융의 [redacted]아파트, [redacted]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, 등록세 등 미납을 이유로 그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다. 1) 다음으로,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가 이 사건 압류 이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위 피고들의 위법한 보전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.

2)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,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(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209534 판결 참조).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근거한 압류의 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
3)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, 과세관청이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는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.

그러나 위 기초사실, 을 마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과세관청이 이 사건 압류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.

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2013. 10. 25.자 질의회신(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)에서는,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,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, 질의와 같이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.

② 조세심판원은 2015. 10. 1.자 2015지1090 취득세 결정으로, 취득세 등이 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제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.

③ [redacted]특별시 [redacted]구청장이 [redacted]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,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세조항과 같은 취지의 면세조항인 구 조세제한특례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있어서, [redacted]은행 주식회사는 [redacted]특별시 [redacted]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.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인 [redacted]행정법원(2015구합52456호)은 2015. 6. 17. 위 면세조항이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[redacted]은행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.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, 항소심인 [redacted]고등법원(2015누49841호)은 2015. 12. 1. 위 면세조항이 위 [redacted]은행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.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, 상고심인 대법원(2016두30569호)은 아직 위 사건을 심리 하고 있다.

라.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압류절차는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,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,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후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압류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31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상호

판사 방혜미

판사 김창용